

문서번호	BSKS-3-1-17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7

2011.12.30.제정 2013.01.01.개정 2019.07.16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교무처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'본교"라 한다.) 교원의 해외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간) 해외 파견 연구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.
- **제3조(자격)** ① 해외 파견 연구 교원은 국비 또는 공공기관이나 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국외에 파견되어 연구하는 자를 말한다.
 - ② 본교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한해 해외 파견 연구 교원 신청자격을 부여한다.
 - ③ 제1항,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총장은 특별히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 - ④ 제2항의 근무연수에는 징계처분, 휴직, 파견 및 2개월 이상의 출장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제4조(신청) 제3조에서 규정한 해외 파견 연구 교원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해외 파견 연구 허가 신청서를 해외 파견 개시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에 연구 계 획서를 첨부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07.16., 2020.09.25.>
- 제5조(선정) 교원으로부터 해외 파견 연구신청이 있을 경우, 연구 계획이 본인이나 대학에 유익한 공헌을 할 수 있는가를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검토, 심사하여 선정한다.
- **제6조(인원)** 해외 파견 연구 교원의 수는 학사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년에 1명이 내로 한다.
- 제7조(급여) 해외 파견 기간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.
- 제8조(각종보고) 해외 파견 연구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정 서식에 의하여 각종 보고를 하여야 한다.
 - 1. 체재지 도착보고 : 출국 후 10일 이내 (별지 2호)
 - 2. 귀국보고 : 귀국 후 7일 이내 (별지 3호)
 - 3. 연구 결과 개요 보고 :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





문서번호	BSKS-3-1-17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7

- 제9조(학술지 게재) ① 해외 파견 연구 교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 실적물을 국내 또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 - 1. 국내 학술지에는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6개월 이내
 - 2. 국제 학술지에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
 - ②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,실장 회의에 별도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.
 - ③ 교내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.
- 제10조(의무 근무 기간) ① 본본교 의무 근무기간은 연구기간 종료 후 해외 연구기간의 5배수가 되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07.16.>
 - ② 제1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구기간 중 본교에서 지원한 급여 전액을 반환 해야 한다.
- 제11조(의무 근무 기간 중의 명예·조기퇴직신청 불가) 해외 파견 연구 교원은 해외파견연구 기간 종료 후 해외파견 연구기간의 5배수가 되는 의무 근무기간 중에는 명예·조기퇴직 신청을 하지 못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2012년 8월 17일 이후부터 기존의 다른 규정에 명시된 처·실장회의의 명칭은 「기획위원회 회의」로 일괄 변경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



문서번호	BSKS-3-1-17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7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3-1-17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4/7

[별지 제1호 서식]

교원 해외 파견 연구 허가 신청서

① 인적사항

성 명	소 속	직 급 CODE
생년월일	년 월 일	임 용 일 자 년 월 일
최종국외	국가 및 연구기관	
파견	지 원 기 관	
경력사항	체 류 기 간	년 월 일 ~ 년 월 일
휴직사항	휴 직 사 유	
(일반,신병등)	휴 직 기 간	년 월 일 ~ 년 월 일

[※]국외유학(파견) 및 휴직 사항은 6개월 이상 기간에 한함.

② 해외 파견 신청 사항

지원(신청)기관		
연구 과제명		
해외 파견 신청기간	20 년 월 일	~ 20 년 월 일
77722072	국 가 명	
연구기관	기 관 명	
	연구기간 20 년	월 일 ~ 20 년 월 일
국외 체류 예정기간	20 년 월 일	~ 20 년 월 일

[붙임] 1. 학과(계열) 교수 동의서 1부

2. 연구 계획서 1부(별지 사용)

20 학년도 해외 파견 교원으로 허가 받고자 신청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 청 인 (인)

학과(계열) 장 (인)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



문서번호	BSKS-3-1-17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5/7

(인)

[별지 제1-1호]

< 학과(계열) 의견 >

학과(계열) 교수 동의사항

직 급	성 명	날인(서명)	직 급	성 명	날일(서명)

	신 청 인	(인)
게어(게) 그스쿨이시기 이 레이 되거 된기 기	1 뒤 제 드 이 됨.	
계열(과) 교수회의에서 위 해외 파견 허가 신	보장에 궁의암.	

학과(계열)장



문서번호	BSKS-3-1-17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6/7

[별지 제2호 서식]

체재지 도착 보고서

연 구 자	성 명			소 속		직 급		CODE	
파견국가					경 유	지			
파견기간				20 년	월 일	~ 20	년 월 일		
출국일자	20	년	월	일	입 국 일	자	20	년 월	일
체재기관									
주소 및									
전화번호									
거주지									
주소 및									
전화번호									
기타									

상기와 같이 해외 파견 교수로 목적지에 입국하였기에 신고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 고 자 (인)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



문서번호	BSKS-3-1-17
제정일자	2011.12.30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7/7

[별지 제3호 서식] <개정 2020.09.25.>

귀국 보고서

	학과(계열)장	교무처장	총 장
경 유			

□보고자 인적 사항

1. 소 속 : 계열(과)

2. 직 위 :

3. 성 명 :

4. 파견종류 : 교원 해외 파견 연구

5. 파견 연구 기관 명 :

6. 출·입국 사항(일시 귀국 포함)

출국: 20 년 월 일 입국: 20 년 월 일

첨부: 여권 사본 1부

200 년 월 일

보고자 성명: (인)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